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6
----------	-----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5.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7. 18.)

“ 원안가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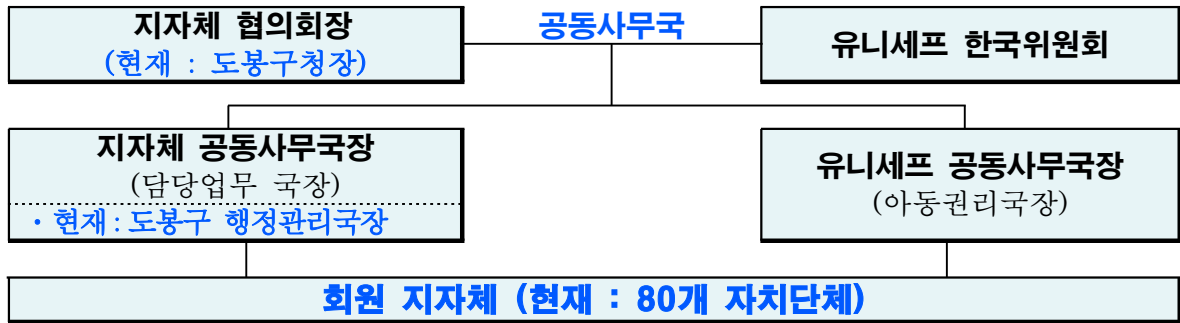
2. 제안이유(제안자 :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 지방자치단체 간의 아동 관련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본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구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 체 명 :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일 : 2015. 9. 14.
- 운영주체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조직구성 : 회장 1인, 부회장 5인, 감사 2인, 고문 등

○ 운영체계



○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 인증 전부터 지역 간 협력 도모
-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연대감 조성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우수사례 공유
- 시민교육 촉진, 아동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일에 참여하도록 권장

○ 가입현황 : 서울특별시 등 전국 80개 지방자치단체 (기준일 : 2019. 6월)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동작, 중랑 등 4개구만 미가입

○ 연 회 비 : 5,000천원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 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민선 7기 구민행복위원회 제안에 따른 구청장 역점 사업

○ 필요성

- 아동 권리보장 및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및 연대 필요
-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보 공유, 아동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대두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협의회 규약(2015. 9. 14 제정)은 협의회 목적, 기능과 구성, 임원 및 조직, 회의 및 의결, 경비의 부담 등 본칙 제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6월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8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음
- 이에, 동 협의회에 참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유엔아동권리협약¹⁾을 이행하고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는 사료되나, 참여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의 설명은 필요해 보임. 또한, 협의회 참여관련 그간의 추진경위(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일정)의 설명도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아동친화도시라는 부분이 아동들의 인권이나 인성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며, 아동친화 관련된 규약 동의안도 강남구의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상징적인 규약안 및 사업안으로 봐도 되는지
- 답 변: 그러함
- 질 의: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아동친화도시 명의를 가져오는 것이고,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유니세프에 가입하고 인증받는 것은 별개인지
- 답 변: 별개인 사항이지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는데 도움이 됨

1)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시사상식사전)

- 질 의: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한 뒤에 아동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 답 변: 아동실태조사 용역은 아동관련 사업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연구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임
- 질 의: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탈퇴를 해도 되는 것인지
- 답 변: 별개 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뒤에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 사항 등이 없다면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봄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년월일 : 2019. 7.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여성가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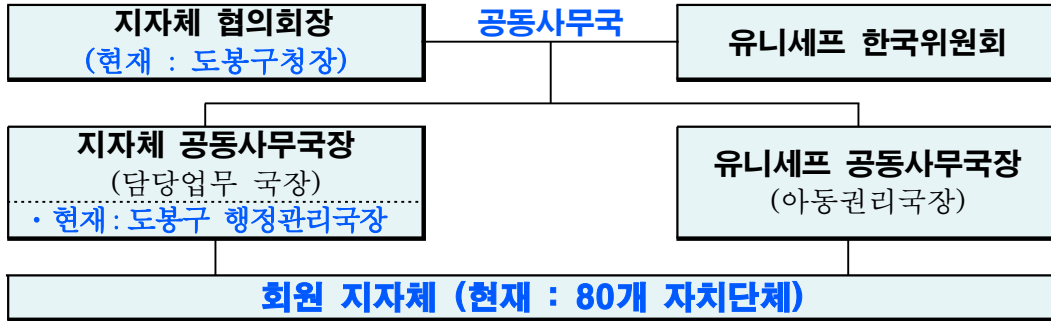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간의 아동 관련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본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구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동의내용 :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규약(안)

3. 협의회 운영 현황

- 단 체 명 :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일 : 2015. 9. 14.
- 운영주체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조직구성 : 회장 1인, 부회장 5인, 감사 2인, 고문 등
- 운영체계



○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 인증 전부터 지역 간 협력 도모
-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연대감 조성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우수사례 공유
- 시민교육 촉진, 아동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일에 참여하도록 권장

○ 가입현황 : 서울특별시 등 전국 80개 지방자치단체 (기준일 : 2019. 6월)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동작, 중랑 등 4개구만 미가입

○ 연 회 비 : 5,000천원

4.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 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민선 7기 구민행복위원회 제안에 따른 구청장 역점 사업

○ 필요성

- 아동 권리보장 및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및 연대 필요
-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보 공유, 아동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대두

5. 참고사항(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152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제152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 11.16.)
-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17. 11. 3.)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3.)

-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개정 2017. 11. 3)

제5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1. 3.)
-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개정 2017. 11. 3.)
- ② 협의회 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7. 11. 3.)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 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
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
른다.(개정 2016. 11. 16.)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3.)
-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는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3.)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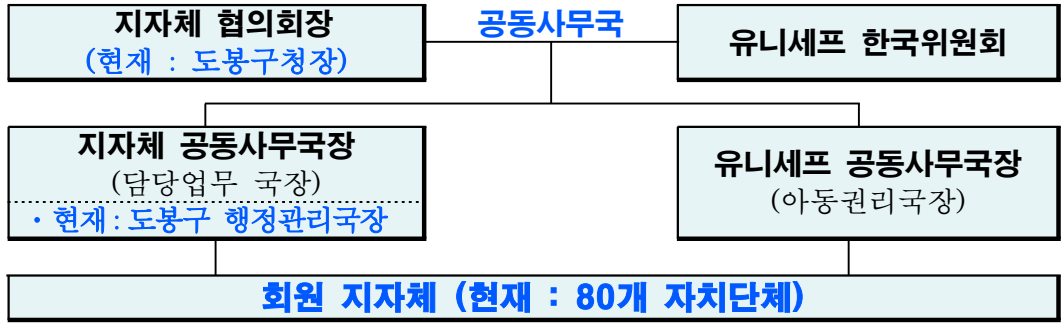
전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

(2019. 6월 기준)

(단위 : 개 자치단체)

시·도명	자치단체명		가입	인증
	기인증	인증추진중		
합계	35	45	80	35
서울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평구 중구 영등포구 용산구	22	12
	※ 강남 , 서초, 동작, 중랑 등 4개구만 미가입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3	2
대구	-	중구, 달서구	2	-
인천	동구 서구	인천광역시	3	2
광주	동구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4	2
대전	유성구	대덕구 서구	3	1
울산	-	북구	1	0
경기	광명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11	5
강원	-	원주시 춘천시 횡성군	3	-
충북	음성군 충주시	옥천군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6	2
충남	당진시 아산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7	2
전북	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4	3
전남	광양시 순천시	장흥군 화순군 나주시	5	2
경북	영주시	구미시 포항시 칠곡군	4	1
경남	-	김해시	1	-
제주	-	-	-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1	1

[별표 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



[별표 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예산·회계의 관장 ○ 회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 임시 및 정기총회 관련 업무 ○ 실무진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가입 승인 ○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업무 ○ 해외 벤치마킹 관련 업무 ○ 아동친화도시 관련 지표 기획 ○ 아동친화도시 관련 대외기관 접촉 ○ 포럼 및 박람회 연사 초청 관련 업무